

교육감 규정 A-413
학교에서의 핸드폰 및 기타 전자제품 사용

I. 현재 검토중인 수정조항의 주제 및 목적 설명

교육감 규정 A-413은 새로운 규정입니다. 이 규정은 학교에서의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사용을 관장합니다.

규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전자제품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: 1) 핸드폰, 랩톱, 태블릿, 아이패드와 기타 비슷한 컴퓨팅 기기 "컴퓨팅 기기" 및 3)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사용 제품
- 각 학교장은 본 규정서에 부합하는 이런 전자제품의 활용에 관한 학교 차원의 정책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교 리더십 팀과 논의하여야 합니다.
- 학교 차원의 정책들은 반드시 학교에서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반드시 이런 제품의 압수 및 반환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.
- 캠퍼스의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들은, 해당 빌딩 위원회에서 반드시 공유하는 공간에서 이런 기기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.
-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화재 대비 훈련이나 기타 응급상황 대비 훈련 시간 동안에는 전원을 끄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.
- 핸드폰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학교 퀴즈, 시험 또는 평가가 실시되는 동안 켜놓거나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.
- 컴퓨팅 기기는 학교에서 재량껏 허용했거나 또는 개별 교육 계획이나 섹션 504 조정 계획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퀴즈, 시험 또는 평가가 실시되는 동안 켜놓거나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.
-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탈의실이나 화장실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.
- 학교 차원의 정책들은 반드시 2014-2015 학년도 대상으로 2015년 3월 2일까지 채택되어야 하며 이후 매년 10월 31일까지 작성되어야 합니다.
- 2014-2015 학년도 대상 학교 차원의 정책이 채택될 때까지, 학교들은 반드시 다음들 중 한 가지 과도기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생, 학부모 및 직원과 의사교환을 하여야 합니다.
1. 학생들은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학교에 가져올 수 있지만 학교에서 전원을 켜놓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;

또는 2. 학생들은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학교에 등교할 때 교문에서 수집하고 학교가 끝날때까지 정해진 공간에 보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학생들은 컴퓨팅 기기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학교에 가져올 수 있지만 학교에서 전원을 켜놓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;

- 2014-2015 학년도부터, 학교들은 반드시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학생, 학부모 및 직원과 관련 정책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음을 학교들의 통합 학교와 청소년 개발 계획에 10월 31일까지 인증하여야 합니다.
- 각 학교는 반드시 이 규정과 학교 정책의 서면 공지 내용을 학생, 학부모 및 직원에게 10월 31일까지 제공하여야 합니다. 2014-2015 학년도에만, 이런 공지를 반드시 학교의 정책이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합니다.
- 각 학교는 반드시 이 규정과 학교 정책에 대해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0월 31일까지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2014-2015 학년도에만, 이런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학교의 정책이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합니다.
- 각 학교는 반드시 학교 웹사이트에 이 정책의 내용을 공지하여야 합니다.
- 교육청의 규율 규정, 학교 정책, 본 규정서 및/또는 교육청의 허용가능한 인터넷 사용과 안전 정책의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 기준을 위반하는 학생들은 규율 규정에 정해진 지도 중재와 징계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.
- 학교에서 교육청의 규율 규정, 학교 정책, 본 규정서 및/또는 교육청의 허용가능한 인터넷 사용과 안전 정책을 위반하여 핸드폰, 컴퓨팅 기기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압수한다면 학교장/지명인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반드시 연락하여야 합니다. 이런 물품들의 압수와 반환은 반드시 학교의 정책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.
- 교육감은 학교 시스템에 최상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본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예외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II. 제안된 개정조항 전문을 찾아볼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.

본 규정 전문은 교육정책 패널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:
<http://schools.nyc.gov/AboutUs/leadership/PEP/publicnotice/2014-2015/February2015Regulations>

III. 현재 검토중인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뉴욕시 학군 담당자의 이름, 담당실, 주소, 이메일 및 전화번호.

성명: Kristina Hardial
담당부서: 안전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
주소: 52 Chambers Street, Room 218, New York, NY 10007
이메일: RegulationA-413@schools.nyc.gov
전화: 212-346-5212

IV. 현재 검토중인 개정조항에 대해 위원회가 찬반투표를 실시할 교육정책 패널의 회의 일자, 시간 및 장소.

2015년 2월 25일, 6:00 p.m.
High School of Fashion Industries
225 W. 24th Street
New York, NY 10011